- (11)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 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 (1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1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 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상태
 - (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다)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라) 난간 울 등의 흔들림 상태 및 탈락 여부
 - (마)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14) 충전전로 또는 그 부근에서 비계 작업중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5)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자재 하역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 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 (16) 자재하역·운반하는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은 제조사의 장비매뉴얼과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 정격하중 등을 준수하고,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검사증, 보험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장비의 정격하중,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17) 비계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 의 떨어짐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자재하역 및 운반작업